

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(안)

1. 제안이유

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각각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어 2003. 1.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 및 위원구성을 새로이 시행되는 법령에 의거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구 분	종 전 내 용	개 정 내 용
법적근거(안 제1조)	○ 도시계획법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구성(안 제3조)	○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 ○ 위원장 : 구청장 ○ 부위원장 : 부구청장 ○ 구의회 의원 ○ 소속 직원 ○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(전체 위원의 2/3이상)	○ 위원장,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7인 이하의 위원 ○ 위원장 : 부구청장 ○ 부위원장 : 위원 중에서 호선 ○ 구의회 의원 ○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 ○ 토지이용·건축·주택·교통·환경·방재·문화· 농림·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(위원 총수의 50% 이상)
소위원회 명칭변경(안 제7조)	○ 도시계획소위원회	○ 분과위원회
간사(안 제8조)	○ 도시개발과장	○ 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

3. 참고자료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, 제114조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, 제112조, 제113조, 제114조
- 입법예고(2003. 10. 10 ~ 11. 2)결과 : 의견 없음

4. 검토의견 (전문위원 : 서 동 근)

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각각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(2003. 1. 1)되어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 및 위원회구성을 새로이 시행되는 법령에 의거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,

· 안 제1조 (법적근거)

“도시계획법”을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”로

· **안 제6조 (위원회 구성 및 임기)**

“위원장, 부위원장 각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”을 “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하의 위원”으로, “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” “부위원장을 부 구청장에서 위원 중 호선”토록 하였으며, “소속 직원”을 “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”으로 “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(전체 위원의 2/3이상)”을 “토지이용·건축·주택·교통·환경·방재·문화·농림·정보통신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”(위원 총수 50%이상)로 구체화하였으며,

· **안 제7조 (소위원회 명칭 변경)**

“도시계획위원회”을 “분과위원회”로

· **안 제8조 (간사)**

“도시개발과장”을 “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”으로 개정하고자함은 행정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으로 생각 됨.

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의 통합제정에 따른 개정안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